# 점 검 표

【점검일: 2016년 월 일】 제공기관 사업코드 사업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. 점검이력 □ 서울시 □ 자치구 □ 지원단 □ 사회보장정보워 클리센터 가. 민원발생 □ 기타( )□ 없음 나. 행정처분 ※ 과거 위반내용, 처분 연월일, 조치내용 등 기재 2. 젂걲결과 구 분 \*위반사항 가. 제공기관 등록 나. 기관 운영 다. 제공인력 관리 라. 이용자 관리 마. 서비스 제공 바. 서비스 비용결제 사. 기타 \* '현장점검 주요내용'을 참고하여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3. 이용자 전화 모니터링 실시(부당결제 등 확보) 명 4. 제공기관 건의사항 및 의견 (제공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) 5. 점검자 종합 의견(제도개선 발굴/우수사례 발굴/기타) 직 성 (서명 소 수검자 (서명) 속 명 직 성 (서명 소 점검자 (서명 위 명 속

	확	· 인	서(	(양식)	)	
제공기관명				사업명		
사 업 명						
제공기관 주소						
사 업 주 관 (시도,시군구)						
점검기간			부터			. 까지
□ 확인사항(필요/	시 파일 또는	별도 자료	붙임.)			
○ 제목 :						
   [규정]						
[위반]						
			위 사	 실에 대ㅎ	· 아여 확인합니다	 }.
				2016.		
수검자 소속:			직급		성명	(서명)
점검자 소속: 〇	)0구		직급		성명	(서명)
점검자 소속: 서	울시지원단		직급		성명	(서명)
점검자 소속: 서	]울특별시		직급		성명	(서명)

	확	인	서(예시	)		
제공기관명			사업명			
사 업 명						
제공기관 주소						
사 업 주 관 (시도,시군구)						
점검기간			부터		•	까지

- □ 확인사항(필요시 파일 또는 별도 자료 붙임.)
- 제목 : 제공인력 자격기준 위반

### (규정)

- 아동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55호(2012.5.29.) 에서 규정한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,
- 심리, 상담, 치료학(언어, 음악, 미술) 등 아동·청소년 발달 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의 경우에는 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
- ※ 근거 : 법 제00조 제00항, 지침 00쪽 등 기재

## (위 반)

- 제공인력 000은 동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, '12년 00월~'13년00월 까지 이용자000등 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정부지원금 000원을 결제하여, 위 자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※ 동 기간중 제공인력000는 00대학교 00학과 0학년 재학 중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임

## 〈자격기준 미 충족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현황〉

이용월	제공인력	이용자	결제금액	결제일자
합계				

※ 분량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

[붙 임] 제공기록지 사본

# 〈 작성 요령 〉

- O (확인서 작성) 추후 환수, 행정처분, 처벌 시 근거 자료가 되는 만큼 위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고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확보
  - 6하 원칙에 의거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문구 등으로 본질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도록 함
  - 불법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 확보
  -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 시 근거 제공
  - 해당 기관장 날인(또는, 기관장에 준하는 자)

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합니다. 2016. 수검자 소속: 성명 (서명) 직급 점검자 소속: ○○구 직급 성명 (서명) 점검자 소속: 서울시지원단 직급 성명 (서명) 점검자 소속: 서울특별시 (서명) 직급 성명

- ※ 수검자 서명은 제공기관 대표가 하나, 대표자 부재 등 확인이 어려울 경우 차 상위자가 서명
- ※ 처분이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제시